

「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결산조항 개정에 따라 구미시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결산서 보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결산서 보고 기한 변경(안 제18조)
 - 당초 : 3개월 이내 → 변경 : 2개월 이내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2020. 6. 4.)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¹⁾의 결산서 보고 기한이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,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비함으로써 법적 일치성 확보 및 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상위법 상 결산 관련 조항이 2020. 6. 4.에 개정되었음에도 지금에서야 현행화를 위해 제출하였기에, 집행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빠른 현행화를 위한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1) 제19조(결산)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산총액, 부채규모, 종업원 수,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※ 별표 - 참고자료

■ 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

- 설립형태 : 비영리 재단법인(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출연기관)
- 설립목적 : 구미시 푸드플랜 실행 중간지원 조직
- 연도별 출연금 내역

(단위 : 천원)

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300,000	800,000	600,000	1,100,000

- 위 치 :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-2, 3층(선산출장소)
- 현 원 : 22명[센터장 1명, 직원 12명, 기간제 9명]

2024년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력 현황							
구 분	총 계	센터장 (5급상당)	현원				기간제
			소계	팀장 (7급상당)	대리 (8급상당)	주임 (9급상당)	
현 원	22	1	12	4	7	1	9

○ 주요사업

-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재편사업
- 학교급식·공공급식 등 지역내외 관계시장 확대를 위한 제 사업
-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등 지역농산물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등

○ 추진실적

- 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 개장 및 매출 47억 달성 : '23.04.~'24.06.
-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가 교육 21회 진행 : '23.04.~'24.06.
 - 농가 832명 이수
-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모니터링단 모집(20명) : '24.02.
-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 협의회 구성(20명) : '24.04.
-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1주년 행사 : '24.05.
- 로컬푸드 직매장 선산휴게소점 재개장 : '24.06.

* 출처: 구미시청 농식품산업과